

칼빈 신학과 제네바 사회복지¹⁾



황대우(고신대학교 교수, 역사신학)

1. 서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 사랑은 두 말할 것도 없이 희생적 사랑, 즉 아가페를 의미한다. 이처럼 기독교를 무조건적인 사랑의 종교라고 정의하는 근거는 십계명의 두 돌 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막 12:30-31)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롬 13:10)이라고 가르쳤던 것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웃의 대상은 단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지체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불신자들까지도 포함한다. 불신자를 위한 전도와 선교도 이웃에 대한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전도와 선교란 죄로 인해 잃어버린 가족으로서의 하나님 형상을 찾고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도와 선교가 세상을 향한 기독교 사랑의 실천이라면 그것은 단순히 입술

1) 본 기고 글은 2014년 11월 15일 새문안교회에서 개최된 “종교개혁신학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이다.

의 말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삶을 통해서도 표현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라면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이것이 곧 합당한 예배자의 자세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기독교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전인적 예배와 전인적 선행을 동시에 요구한다.²⁾

기독교는 이웃 사랑의 실천을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 간주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음의 사도요, 성령을 통해 수동적인 하나님 사랑을 능동적인 이웃 사랑으로 전환하는 사랑의 변전소다. 이런 점에서 사회봉사와 구제는 이웃 사랑에 근거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전인적 선행이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가운데 하나다. 여기서 기독교 사회복지 개념이 도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사회복지제도는 서양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러한 기독교 정신과 문화의 영향이 크다.

기독교 역사에서 세속 정부 중심의 새로운 사회복지제도가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가 16세기다. 새로운 사회복지제도는 종교개혁 정신과 종교개혁자들의 헌신적 노력의 결실이었다. 16세기에는 개신교 지역의 자선단체와 복지시설이 정부의 도움으로 광범위하게 재조직되었다. 따라서 종교개혁과 사회복지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인데, 여기서는 제네바라는 도시의 사회복지제도와 이것을 위한 성경적 신학적 토대를 제공한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칼빈의 사회복지 개념을 조명하고자 한다.

제네바의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이미 상세하고 깊이 있는 연구 논문들과 저술들이 다수 출판되었고,³⁾ 또한 이것을 근거로 작성된 한글 논문들도 다수 있다.⁴⁾ 따라서 이 선행된 연구 자료들을 참고하되, 특별히 칼빈의 사회복지 사상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핵심 쟁점으로 연구되지 않은 부분인 칼빈 신학과 제네바 사회복지의 상관관계, 즉 사회복지에 대한 칼빈의 신학적

2) 그리스도인의 삶과 예배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참고. 황대우 편저, 『삶, 나 아닌 남을 위하여: 마르틴 부서의 기독교 윤리』(서울: SFC출판부, 2007); 황대우, “종교개혁과 예배: 부셔와 칼빈의 예배 이해를 중심으로” 『개신과 부흥』 제14권(2014), 66-91.

개념과 원리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일에 집중할 것이다.

2. 16세기 사회복지 개념

구제를 위한 사회복지 개념이 16세기에 비로소 등장한 것은 아니다. 중세시대에도 사회복지에 해당하는 구제제도가 있었다.⁵⁾ 중세시대 가난한

- 3) 칼빈과 제네바 사회복지에 관한 대표적인 전문연구가를 연구 업적이 오래된 순으로 나열하면, 키파, 울슨, 이너스, 맥키, 페티슨 등으로 소개할 수 있는데, 다음 목록은 이 순서를 따른다. Robert M. Kingdon, "Social Welfare in Calvin's Geneva," *American Historical Review* 76 (1971), 50-69; idem, "Calvinism and Social Welfare," *Calvin Theological Journal* 17 (1982), 212-230; idem, "Calvin's Ideas About the Diaconate: Social or Theological in Origin?," *Piety, Politics, and Ethics: Reformation Studies in Honor of George Wolfgang Forell*, ed. by Carter Lindberg (Kirksville, MO: Sixteenth Century Journal Publishers, Inc., 1984), 169-180 = "칼빈의 집사 직분 이해: 그 기원은 사회적인가 또는 신학적인가?," 『칼빈과 사회』 이환봉 편, 이신열 역 (부산:고신대학교출판부, 2010), 135-158; idem, "The Deacons of the Reformed Church in Calvin's Geneva," *Church and Society in Reformation Europe*, ed. by Robert M. Kingdon (London: Variorum Reprints, 1985), 81-90; Jeannine Evelyn Olson, "The Bourse Francaise: Deacons and Social Welfare in Calvin's Geneva," (Ph.D.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1980); idem, "The Bourse Française: Deacons and Social Welfare in Calvin's Geneva," *Pacific Theological Review* (1982), 18-24; idem, "Calvin and the Diaconate," *Liturgy* 2 (1982); idem, *Calvin and Social Welfare: Deacons and the Bourse française* (London & Toronto: Associated University Presses, 1989); idem, "칼빈이 제네바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 것에 관한 연구," 『칼빈과 사회』 이환봉 편, 윤천석 역 (부산:고신대학교출판부, 2010), 159-176; idem, "칼빈과 사회윤리적 문제," 『칼빈 이해의 길잡이』, 도널드 맥킵 편, 한동수 역 (서울:부흥과개혁사, 2012); William C. Innes, *Social Concern in Calvin's Geneva* (Allison Park: Pickwick Publications, 1983); Elsie Anne McKee, *John Calvin in the Diaconate and Liturgical Almsgiving* (Genève:Librairie Droz, 1984); idem, *Diakonia in the Classical Reformed Tradition and Today* (Grand Rapids: Eerdmans, 1989) = 『개혁교회 전통과 디아코니아』, 류태선 & 정병준 역 (서울: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Bonnie L. Pattison, *Poverty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Eugene OR: Pickwick Publications, 2006).
- 4) 제네바 사회복지에 관한 대표적인 한글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박경수, 「교회의 신학자 칼뱅」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263-301; 이상규, "칼빈과 구호활동," 『칼빈과 사회』 이환봉 편 (부산:고신대학교출판부, 2010), 177-200; 안인섭, "칼빈의 제네바 교회의 사회복지," 『칼빈의 목회와 윤리, 사회참여』 안명준 편 (서울: SFC, 2013), 354-371; 박영호, "칼빈의 사회복지 사상 고찰," 『칼빈의 목회와 윤리, 사회참여』 안명준 편 (서울: SFC, 2013), 395-425.
- 5) 중세의 구제와 사회복지에 관한 상세한 분석은 다음 참고. Brian Tierney, *Medieval Poor Law: A Sketch of Canonical Theory and Its Application in Englan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9); Michel Mollat, *The Poor of the Middle Ages: An Essay in Social History*, translated by Arthur Godhamme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6).

자에는 단지 성경이 언급하는 고아와 과부와 여행객만 아니라,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 즉 수많은 수도사들도 포함되었다. 자발적 빈민은 중세교회가 가난을 기독교 경건의 핵심으로 여겼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성직자와 수도사들에게도 자발적 가난, 즉 청빈이 강요되었던 것이다. 중세 사람들에게 영적 가난은 육체적 가난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중세시대의 자발적 가난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행위로 존경의 대상이었다. 이것이 13세기 이후 나타나는 탁발수도원의 설립 배경이었다.⁶⁾

중세시대의 빈민 구제는 교회의 권한에 속한 것이었다. 교회는 구제 기금을 모아야 했고 성직자들은 자기 관할 지역의 가난한 자를 도울 의무가 있었다. 교회 소속 구제기관이나 복지기관의 직원은 주로 사제들과 수녀들이었다. 물론 구제는 성직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종교적 의무로 간주되었다.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성된 자선단체들도 구제 활동에 참여했다. 자비로운 구제행위가 존경받을만한 미덕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귀족들과 부자들은 자신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주는 수도원을 설립하거나, 자신의 공로를 쌓기 위해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형편의 그리스도인을 돕는 자선단체를 설립하곤 했다. 구빈원과 같은 자선단체들의 필요한 재원들은 그들의 기부로 충원되었다. 수도사들과 자선단체 종사자들은 설립자들과 기부자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보답했다. 이처럼 중세시대 가난과 구제는 구원의 수단이었다. 귀족이나 부자는 수도원이나 교회와 같은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대가로 그들로부터 제공되는 영적인 혜택을 누렸던 것이다.⁷⁾

중세 수도원은 순례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했는데, 여기서 중세의 대표적

6) 중세시대의 가난에 관한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참고. Pattison, *Poverty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39-79. 이 책은 가난에 대한 칼빈의 신학적 이해를 분석한 연구논문인데, 여기서 패티슨은 가난에 대한 칼빈의 이해가 그의 기독교론에 의존적이라고 결론 내린다. 가난과 부에 대한 칼빈의 교회론적 이해에 대해서는 이 책의 마지막 10장(283-345)에서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7) 참고. Pattison, *Poverty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39-79.

인 자선단체인 구빈원(Hospital; Almshouse)⁸⁾이 탄생했다. 대부분 수도원에 소속된 구빈원도 처음에는 탁발수도사들과 순례자들에게만 숙식을 제공했지만, 차츰 십자군 전쟁의 피해자들인 부상자들과 병자들, 실항민들, 고아, 과부들까지 돌보게 되었다. 중세 구제기관들의 무절제한 구제행위가 자발적인 떠돌이 부랑아를 양산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다. 중세시대에는 “재산을 소유하지 못한 도시 빈민 계층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5%에” 육박했다.⁹⁾

14-15세기는 유럽 전역에 퍼진 전염병과 백년전쟁 등으로 병자와 고아, 과부, 부상자 등 빈민이 과히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기였는데, 당시 구빈원을 포함하여 성직자 중심의 중세 자선단체들은 그들 모두를 수용할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구제 기능 마비의 위기에 직면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이 점점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열악하게 되자 고향을 버리고 방랑하면서 구걸로 연명하는 걸인들의 수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런 자들은 거룩한 빈민도, 불가피한 빈민도 아니었지만 때론 동정을 얻기 위해 장애인을 가장하기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하는 빈민과 잘 구분되지 않았다. 따라서 구제는 무질서하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교회와 자선기관에 대한 원성이 쏟아졌다. 16세기 초반에 빈민의 구제 문제는 거의 최악의 상태였다.

루터는 종교개혁 초기부터 이미 구제와 자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분명했다. 비텐베르크(Wittenberg)의 종교개혁자는 1520년 자신의 『선행에 관하여』에서 십계명의 일곱 번째 계명을 해설하면서 ‘호의, 관대, 자선’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고대독일어 명사 ‘밀딕카이트’(Mildickeit)를 “각자가 자신의 것으로 기꺼이 돕고 섬기는 행위”라고 정의했다.¹⁰⁾ 여기서 루터는 모든 선행이 믿음 안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

8) 여기에 해당하는 다른 용어들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어 ‘메종 디외’(Maison-Dieu)와 라틴어 ‘도무스 테우스’(Domus-Deus)가 있다. ‘구빈원’(Hospital)이라는 용어 해설에 관해서는 다음 참고, McKee, *John Calvin in the Diaconate and Liturgical Almsgiving*, 94.

9) 박경수, 『교회의 신학자 칼뱅』, 266.

다. “탐심의 원인은 미신이고 관대함의 원인은 믿음이므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관대한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탐욕스럽고 좁스럽다… 믿음은 관대함이라는 선행의 감독관이요 마부다.”¹¹⁾ 루터에게 있어서 모든 선행은 믿음의 결과이지 결코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역설함으로써 중세의 공로사상을 배격했다. 관대함 즉 자선이라는 것 역시 선행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루터는 구제와 자선을 믿음을 뒤따르는 선행의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구제와 자선의 원인을 사랑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믿음으로 규정했던 것이다. 이처럼 구제와 자선의 문제는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와 긴밀하게 묶여 있다.

이신칭의 교리를 설교한 후에 루터는 1520년에 출판된 자신의 『독일 귀족에게 고함』에서 구제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전 기독교 세계에서 모든 구걸이 금지되도록 하는 것은 가장 중대한 필요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스도인들 중 아무도 구걸하러 나가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에게 그렇게 할 용기와 진지함만 있다면 그것을 위한 손쉬운 규정을 만들 수도 있는데, 즉 그래서 각 도시마다 그곳의 가난한 백성을 부양하도록 하되, 그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순례자로 부르든 탁발수도사로 부르든 어떤 외부 구걸인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도시는 각기 자신의 주민들을 부양할 수 있을 것이다. … 가난한 자들은 배고파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을 만큼 알맞게 보살펴지는 것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10) Martin Luther, *Studienausgabe* Band 2, ed. by Hans-Ulrich Delius (Berlin: Evangelische Verlagsanstalt GmbH, 1982), 82 (=Martin Luthers Werke (Weimar: H. Böhlau, 1883-1993). 이하는 WA로 표기함) 6, 270. *Von den guten Werken*): “... deutsch / Mildigkeit / wilchs ist ein werck das von seinem gut yderman willig ist zuhelffen vnnd dienen /...” 루터에게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라, 제6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인데, 이유는 그가 제1계명과 제2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제1계명으로 간주하고, 제10계명을 두 계명 즉 제9계명과 제10계명으로 나누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루터는 도둑질이 욕심과 탐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탐심의 반대 개념으로 “관대함”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

11) Luther, *Studienausgabe* Band 2, 84 (=WA 6, 272. *Von den guten Werken*): “... / das des geytzts vrsach / ist misztraw / der mildigkeit aber vrsach ist der glaub / dan darumb das er got trawet / ist er mild... Widerumb / darumb ist er geitzig vnd sorgfeltig / das er got nit trawet. ... / der glaub der werckmeyster vnd treyber ist / das guten wercks der mildigkeit / ...”

현재 불합리한 악용이 만연한 것처럼, 누군가 악하게 살면서도 다른 사람의 노동으로 무위도식하고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것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 바울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오직 설교하고 다스리는 사제들 외에는 아무도 다른 사람의 재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 규정된 것이다.”¹²⁾

중세교회의 입장과는 달리 루터는 가난을 거룩한 삶의 방편으로 보지 않았다. 또한 재산 문제 처리를 칼의 권세인 정부의 일로 보았기 때문에 빈민을 구제하는 자선 사업 역시 정부가 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사고는 취리히의 종교개혁자 츠빙글리를 비롯한 거의 모든 종교개혁자들에게서도 대동소이하다. 즉 구걸을 금지하고 빈민 구제의 일차적 책임을 교회보다는 세상 통치자와 정부에 돌리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재산권이 교회가 아닌, 세상 통치자와 정부에게 속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¹³⁾

또한 중세 로마가톨릭교회가 ‘거룩한 가난과 세속적인 부’라는 대조 공식을 만들어서 빈민구제를 위한 자선행위를 구원의 공로로 이해했던 것과는 달리, 종교개혁자들은 가난 자체를 거룩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선행위를 공로로 이해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자선행위를 구원을

12) Luther, *Studienausgabe* Band 2, 146-147 (= WA 6, 450-451. *An den christlichen Adel*): “Es ist wol der grosten not eyne / das alle betteley abthan wurden in aller Christe(n)heit / Es solt yhe niemand vnter den Christen betteln gahn / es were auch ein leychte ordnung drob zumachen / wen wir den mut vnd ernst datzu thete(n). Nemlich das ein yglich stad yhr arm leut vorsorgt / vnd keynen frembden betler zuliesse / sie hiessen wie sie wolten / es walbruder odder bettel orden. Es kund yhe ein yglich stadt die yhren ernerer /... Es ist gung das zimlich die armen vorsorgt sein / da bey sie nit hungers sterben noch erfrieren / Es fugt sich nit das einer aufs andern erbeit mussig gehe / reich sey / vnd wol lebe / bey einis andern vbel leben / wie itzt der vorkeret miszprauch gehet. dan sanct Paul sagt / wer nit erbeytet / szol auch nit essenn. Es ist niemand vnn der andernn gutter zulebenn vnn got vorordnet / denn allein denn predigenden vnnnd regierendenn priestern /...” 한글 번역에 관해서는 다음 참고, 존 딜렌버거 편, 『루터 저작선,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4), 542-543.

13) 참고, McKee, *Diakonia in the Classical Reformed Tradition and Today*, 37-38. = 『개혁교회 전통과 디아코니아』, 74-75; 박경수, 『교회의 신학자 칼뱅』, 272.

위한 일종의 공로가 아니라, 신자의 당연한 의무요, 재산관리를 포함하여 세상통치권을 가진 통치자와 정부가 백성의 보호를 위해 저야할 책임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은 도움을 받아야 할 빈민과 그렇지 않은 게으른 빈민을 구분하려고 했으며 부당한 노동 착취로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런 점에서 루터를 비롯한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당시 자발적 가난의 대명사인 수도원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은 이유 없는 항변이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개신교에는 더 이상 수도원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16세기 당시 개신교 진영 내의 수도원들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특히 교육기관과 구빈원으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었다.

종교개혁자들은 구원을 오직 믿음과 은혜로만 이루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가난과 부의 문제를 구원과 연결하는 중세적 전통을 거부할 수 있었다. 그들이 가르친 것은 자신의 구원을 위한 공로로서의 선행이라는 중세적 개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로 받게 된 자신의 구원을 감사하기 위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위대한 종교개혁의 교리인 이신칭의의 결과였다. 종교개혁자들은 자발적 가난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았고 부와 권력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다. 즉 가난이 부보다 더 거룩한 것도 아니며, 부가 가난보다 더 세속적인 것도 아니라고 보았던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에게 자선행위는 구원의 공로가 아니라 사회적 인간의 선행 가운데 하나였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산을 잘 관리할 책임은 청지기인 신자의 종교적 소명과 연관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축적된 부 자체를 경시하지 않았으며, 모든 지상적 복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해서 정당하게 벌어들인 재물도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간주했다. 이런 사고의 지나친 단순화는 한편으로는 모든 물질적 성공을 신적 축복의 결과로 과대평가하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가난을 비난 받아야 마땅한 게으름의 결과로 평가하는 잘못에 빠지기 십상이다.

세계적인 종교개혁 연구가요, 가장 뛰어난 칼빈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맥키 교수는 종교개혁자들의 사상 속에 나타난 부와 가난과 자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그들은[=16세기 개신교 신학자들은] 이 땅에서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기독교인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수여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강하게 확인시켰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즐길 만하나, 주의 선물은 일차적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이웃을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했다. 자생력이 없는 가난한 자들 곧, 과부, 고아, 병자, 어려움에 처한 난민들은 구제를 가장 필요로 하는 이웃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이라면 그들을 부끄럽게 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면서 이 ‘소자’들을 돌볼 책임을 지냈다. 가난한 사람들 또한 그들이 받은 도움에 좋은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부여 받았다. 이렇게 해서 거룩함은 더 이상 가난 혹은 부가 아니라 일과 청지기 정신과 연결되기에 이른다.”¹⁴⁾

맥키 교수에 따르면 16세기 종교개혁과 더불어 사회복지의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사회복지 개혁의 첫 출발지는 독일남부의 도시 누렘베르크(Nuremberg)였다. 이 도시는 1522년 법령을 통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새로운 유형을 소개했다는 것이다.¹⁵⁾ 반면에 제나인 올슨(Jeannine Olson) 교수가 제시하는 자료는 복지사업을 위한 공공 기금 마련의 방안을 소개하는 “비텐베르크 교회규칙”인데, 이것은 1522년에 안드레아스 보덴슈타인 폰 카를슈타트(Andreas Bodenstein von Karlstad)에 의해 제정되었다고 한다.¹⁶⁾ 비록 두 여성 교수가 각자 자신의 견해를 위해 선택한 자료가 서로 다를지라도 이 두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루터파가 16세기 최초로 사회복지 개혁을 시도한 주인공이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사회복지제도의 조직은 신앙고백적 경계를 초

14) 엘시 맥키, 『칼뱅의 목회 신학』, 이정숙 역 (서울:두란노아카데미, 2011), 118-119.

15) McKee, *Diakonia in the Classical Reformed Tradition and Today*, 54. = 『개혁교회 전통과 디아코니아』, 99.

16) 올슨, “칼빈과 사회윤리적 문제,” 252-253.

일하여 유사했다.”¹⁷⁾

맥키 교수는 16세기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시작된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에서 세 가지 특징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중앙 집중화(centralization), 평신도화(laicization), 그리고 이성화(rationalization)”이다.¹⁸⁾ 먼저, 중앙 집중화란 각각 독립적으로 관리되던 여러 구제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여 중앙에서 통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전문가들에게 기금을 맡김으로써 기금 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또한 반복 구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둘째로, 평신도화란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가 구제기관의 관리와 경영을 맡는다는 것이다. 중세의 자선단체에도 평신도가 참여하곤 했지만 어디까지나 보조 역할 이상을 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평신도화를 통해 평신도가 단순한 보조적 참여자가 아닌, 경영과 관리의 전권을 가진 주체가 되고, 이전에 주체였던 성직자는 보조 역할만 감당하는 제도로 개혁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성화란 구제 받을 빈민을 분류하고 정리함으로써 누가 합당한 구제 대상인지 가려내어 구제 대상의 형편에 따라 적절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받도록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관할지역 빈민들과 일시적 구제 대상인 외부인들을 구분한 것, 건강한 사람들을 출생지에 따라 분류하여 적당한 일 자리를 알선해주는 것 등이다. 또한 구걸행위는 금지되었고 외부에서 구걸하러 온 유랑자들은 대부분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런 개혁의 주체는 대부분 “인문주의 지성인들과 비성직의 부자 상인들”이었는데, “이들은 기금을 중앙 집중화하고, 주교가 아닌 시정부의 말에 따라 자격 있는 행정관들을 뽑았다. 그런 후에는 제대로 등록된 가난한 자들에게 구호금이나 물품을 정기적으로 나눠 주었으며, 구걸 행위를 통제

17) McKee, *Diakonia in the Classical Reformed Tradition and Today*, 55. = 『개혁교회 전통과 디아코니아』, 100.

18) 맥키, 『칼뱅의 목회 신학』, 108. 이 세 가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 참고. McKee, *John Calvin in the Diaconate and Liturgical Almsgiving*, 96-100; idem, *Diakonia in the Classical Reformed Tradition and Today*, 50-51. = 『개혁교회 전통과 디아코니아』, 93-95.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들의 개혁 프로젝트는 점차 서유럽 여러 곳에 소개되었다.”¹⁹⁾ 이처럼 16세기 유럽 대부분의 도시들에는 세속 정부가 사회복지를 책임지는 형태의 제도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교회는 구제를 위해 주도적 역할이 아닌 보조 역할로 만족해야 했다.

3. 제네바의 사회복지 제도

3-1. 16세기 제네바의 환경

1535년에 제네바는 사보이(Savoy, 싸부와) 공국과 로마가톨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종교개혁의 도시가 되었다. 제네바의 해방을 위해 1528년에 종교개혁을 수용한 베른(Bern)이 군사적 도움을 제공했기 때문에, 1535년 이후 제네바는 베른의 내정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제네바는 지정학적으로 프랑스와 사보이 공국,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주변 스위스 도시들 사이에 끼여 있는 요충지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한 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제네바는 종교개혁을 수용할 당시 인구가 약 일만 명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²⁰⁾ 루터의 비텐베르크(Wittenberg) 인구가 오천 명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대도시였다. 스위스에서 군사-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강력했던 도시 취리히(Zürich)나 교육의 중심 도시 바젤(Basel)에 비해서도 결코 작지 않은 도시였다. 제네바 인구는 “1542년 초에 시작”된²¹⁾ 피난민들의 제네바 유입으로 인해 급격하게 증가했다. 심지어 1549년부터 1560년까지 11년 간 제네바에 등록된 피난민 수만 해도 약 오천 명 정도였는데, 딸린 식구들, 즉 아내, 자녀들, 종들까지 계산한다면 가히 폭발적인 인구

19) 맥키, 『칼뱅의 목회 신학』, 109-110.

20) T.H.L. Parker, *John Calvin* (London: Lion Publishing, 1977), 64. 한글 번역은 다음 참고.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6; 1992), 122.

21) 프레드 그레함, 『건설적인 혁명이 칼빈: 사회와 경제에 끼친 영향』, 김영배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6), 59.

성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²²⁾ 1560년에 제네바 인구는 이 만 명을 훌쩍 넘을 만큼 엄청나게 증가했다.²³⁾ 등록된 피난민 가운데 약 과반수 정도는 직업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 전문 기술자들이었다.²⁴⁾ 이들 대부분은 신앙적 이유 때문에 이주한 피난민들로 유럽의 원근 각처에서 몰려왔지만, 가까운 프랑스로부터 온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것으로 보인다.²⁵⁾

16세기 제네바는 모든 시민이 구성원인 총회에서 매년 선출되는 4명의 시장관이 시를 대표했고, 4명의 시장관을 포함하여 모두 25명으로 구성된 소의회가 시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었으므로 ‘시의회’로 불렸고, 이외에도 60인회와 200인회도 있었다. 당시 제네바 시민은 세 부류의 사람들, 즉 “씨뚜와이양”(citoyens)로 불리는 시민과 “부르주와”(bourgeois)로 불리는 시민권자, 그리고 “아비땅”(habitants)으로 불리는 체류민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시민이란 제네바에서 출생하여 제네바에서 세례를 받은 제네바 출신을 의미하고, 시민권자란 제네바 출신이 아닌 외부인으로서 시민권을 사거나 해서 시로부터 시민권을 획득한 자들을 의미하며, 체류민 역시 제네바 출신이 아닌 외부인으로 단지 제네바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자들을 의미한다. 시민은 제네바 시의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누렸던 반면에 시민권자는 시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 소의회 의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제한되었다. 다만 시민권자의 자녀는 제네바 출신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소의회 의원이 될 수 있었다. 체류민은 제네바

22) William Monter, *Calvin's Geneva* (New York & London & Sydney: John Wiley & Sons, 1967), 165-170. 이 책 169쪽에서 몽터는 1550-1562년 사이에 제네바로 유입된 이민자가 최소 칠천 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23) William G. Naphy, *Calvin and the Consolidation of the Genevan Reformation* (Manchester &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4), 140, n.4: “By 1550 the population of Geneva had risen to between 12,400 and 13,893 but would balloon to around 21,400 by 1560.”; 헤르만 셀더하우스, “피난민으로서의 칼빈: 신학을 반영하고 전기의 자료가 되는 칼빈의 시편 주석에 대한 연구,” 『칼빈과 사회』 이환봉 편, 황대우 역 (부산: 고신대학교출판부, 2010), 205; 올슨, “칼빈이 제네바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 것에 관한 연구,” 164.

24) 그레함,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사회와 경제에 끼친 영향』, 158-159.

25) Monter, *Calvin's Geneva*, 171-173.

시민으로서의 어떤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누릴 수 없었다.²⁶⁾ 대부분의 피난민들은 체류민의 신분이었고, 그 가운데 소수만 시민권자가 되었다.

루터의 비텐베르크가 농업 중심의 도시였던 것과는 달리 칼빈의 제네바는 상업 중심의 도시였다. 루터는 땅을 경작하는 농업을 성경적인 것으로 본 반면에 장사를 통해 이윤을 남기는 상업을 비성경적인 악한 것으로 간주했다.²⁷⁾ 루터는 농업을 통한 부의 축적만을 인정했지만, 칼빈은 농업뿐만 아니라, 상업을 통한 부의 축적도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루터는 고리대금업을 악으로 규정한 반면에, 칼빈은 편취를 위한 부당하고 교활한 방법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또한 고리대금업 자체를 전문 직업으로 삼지 않는다면, 고리대금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칼빈은 돈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고리대금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전통적 성경해석도 역시 거부했던 것이다.²⁸⁾ 그렇지만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이자놀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엄격하게 금지했다. 당시 이율은 5%를 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했는데, 루터와 칼빈 둘 다, 이 규정처럼, 이자의 상한선을 4-5%를 넘지 않도록 책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었다.²⁹⁾

루터와 달리, 칼빈이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빈손으로 제네바에 이주한 피난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 자금을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었는지 않았을까? ‘과연 고리대금업이 합당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칼빈은 당위성 문제를 고민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리대금업의 유용성과 형평성을

26) 볼페르트 더 흐레이프, 『칼빈의 생애와 저서들』, 황대우 & 김미정 역 (서울:SFC, 2006), 57.

27) 그레함,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사회와 경제에 끼친 영향』, 111.

28) Ronald S. Wallace,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A Study of Calvin as Social Reformer, Churchman, Pastor and Theologian* (Grand Rapids:Baker Book House & Edinburgh:Scottish Academic Press, 1988), 87-89. = 로날드 월레스, 『칼빈의 사회 개혁 사상: 사회-종교개혁자, 목회자, 신학자로서의 칼빈 연구』, 박성민 역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126-128; 그레함,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사회와 경제에 끼친 영향』, 174-191.

29) 올슨, “칼빈과 사회윤리적 문제,” 275-276.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16세기 당시 유럽의 현실, 특히 제네바의 상업적 현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수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자세를 그래함은 “칼빈의 현실 인정 신학”으로 정의하는데, 루터의 자세와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루터는 그가 목격하는 사업에서의 악의 증거들을 경계하는 반면에, 칼빈은 모든 인간의 일이 악으로 오염되어 있다고 엄격하게 가정하며-신중한 가정- 그가 살았고 일했던 도시와 복음을 관련시키려고 했다… 참된 종교는 병자를 문병하고 과부들과 고아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현재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대한 복음의 관련성을 찾고자 노력한다. 칼빈은 그 당대의 다른 사람들보다 이것에 대해 더욱 진지한 인물이었다.”³⁰⁾

3-2. 전통적인 시립 사회복지 제도: “오스삐탈”(hospital)

한편으로 칼빈은 세상에 죄로 오염되지 않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전적 부패 교리를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타락한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일반은총 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현실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다. 칼빈이 제네바의 종교개혁자가 되기 전에 이미 제네바 시에는 전통적 사회복지 제도인 “오스삐탈”³¹⁾ 즉 구빈원 혹은 구호원으로 번역될 수 있는 시립 구제기관이 존재했다. 구빈원은 “1535년 11월 29일에 시의회가 생뜨 끌레르(Sainte Claire)”의 옛 수녀원 자리에 설립한 것으로 성령구빈원이라고도 불렸고, 이 구빈원 외에도 제네바에는 흑사병구빈원이라 불리는 것이 하나 더 있었다.³²⁾ 흑사병구빈원은 중세부터 시작된 페스트가 유럽 전역을 휩쓸었을 때 설립된 것으로, 그 흑사병이 16세기에도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존속되었다. 이것은 제네바 정부가 종교개혁을 수용함에 따라 제네바에 있던 일곱

30) 그래함,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사회와 경제에 끼친 영향』, 112-113.

31) 이것은 현대 불어로 “오삐탈 제네랄”(Hôpital Général), 즉 종합구빈원에 해당한다.

32) 그래함,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사회와 경제에 끼친 영향』, 149-150.

개의 작은 구빈원을 통합하여 마련한 새로운 중앙집권적 사회복지제도였다.³³⁾

새롭게 재정비된 구빈원은 빈민과 환자를 돌보는 평신도에 의해 운영되는 시립 사회복지시설이었다. 운영을 위한 재정 출납과 감독은 “프로퀴르르”(procureurs, 재무담당자들, 재무행정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맡았고, 구빈원의 모든 실무, 즉 구빈원의 모든 빈민과 환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그들을 직접 돌보는 업무는 “오스삐탈리에르”(hospitalier, 구호담당자, 구호실무자)가 담당했는데, 이 두 부류의 사역은 칼빈이 구분한 두 종류의 집사 직무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³⁴⁾

칼빈이 작성한 1541년 제네바 교회법에는 네 개의 교회 향촌 직분, 즉 목사나 교사와 장로와 집사를 소개하면서 네 번째 교회 직분인 집사를 기능상 두 종류의 것으로 구분했다. “고대 교회에는 언제나 두 종류의 집사들이 있었다. 일부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재화, 즉 매일의 구제[금]뿐만 아니라, 재산과 임대[금]과 숙박[비]까지도 수납하고 분배하고 보관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다. 다른 일부는 병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식량을 배급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런 관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재무담당자들(procureurs)과 구호담당자들(hospitaliers)이 있기 때문이다.”³⁵⁾

구빈원의 구호담당자를 고용하는 일, 그의 생활비를 지불하는 일, 그의

33) 올슨, “칼빈이 제네바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 것에 관한 연구,” 160; McKee, *Diakonia in the Classical Reformed Tradition and Today*, 56-57. = 「개혁교회 전통과 디아코니아」, 101.

34) McKee, *John Calvin in the Diaconate and Liturgical Almsgiving*, 106-108. 재무담당자들은 4명이었고 구호담당자는 1명이었으며 재무담당자들 가운데 1명인 회계업무를 맡았고 나머지 3명은 수납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참고. Innes, *Social Concern in Calvin's Geneva*, 122-123.

35) OS 2, 340 (= CO 10a, 23): “Il y en a eu tousiours deux especes en lesglise ancienne, les ungs ont este deputez a recevoir, depenser et conserver les biens des puvres, des puvres, tant aulmosnes quotidiannes que possessions, rentes et pensions. Les aultres pour soigner et panser les malades et administrer la pitance des puvres, laquelle coustume nous tenons encorres de present.” 한글 번역은 다음 참고. 『칼뱅 작품 선집』 III, 박건택 편역 (서울:총신대학교출판부, 2009), 140; 프레드 그레함,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사회와 경제에 끼친 영향』, 144.

업무를 감시 감독하는 일 등등, 구빈원의 모든 운영권 및 경영과 재정에 대한 감시감독권은 재무담당자들인 운영위원들에게 있었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속해 있는 시의회나 그보다 더 큰 60명, 200명 규모의 시의회들로부터 선출되었다.”³⁶⁾ 재정을 마련하는 것도 재무담당자들의 업무였는데, 구빈원 운영을 위한 주 수입원은 제네바 시정부가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일 정액의 지원금, 시가 징수한 벌금의 일부, 외부의 기부금과 후원금, 자선을 위해 기부된 물품들의 판매 수익금 등이었다.³⁷⁾

구호담당자는 유일한 유급 풀타임 사역자였고 구빈원의 모든 실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자였다. 구호담당자는 주일마다 재무담당자들에게 자신의 업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의 업무는 단순히 빈민, 환자, 약자, 손님들에게 음식과 생필품을 나누고 그들을 돌보는 정도로 제한되지 않았고, 교사들을 고용하여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 일, 밭 경작을 감독하는 일, 가축을 돌보는 일, 가공 생산물을 감독하는 일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것이었다.³⁸⁾ 그래서 구호담당자의 아내도 남편의 동역자로 함께 일해야 했다. 시립구빈원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던 칼빈은 1545년에 “구빈원의 회계를 정리하고, 총수입을 기록하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을 잘 관리하도록” 시의회에 요청했는데, 그의 제안은 대부분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³⁹⁾

3-3. 새로운 사립 사회복지 제도:

“부르즈 프랑쎬즈”(Bourse française)

1536년에 종교개혁을 수용한 후 제네바 도시는 신앙적인 박해를 피하기 위해 이주하는 프랑스어권 피난민들의 도피처가 되었다. 하지만 제네바의

36) 올슨, “칼빈과 사회윤리적 문제,” 269.

37) 그레함,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사회와 경제에 끼친 영향』, 147-148.

38) 그레함,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사회와 경제에 끼친 영향』, 153-154.

39) 올슨, “칼빈과 사회윤리적 문제,” 270.

공공 사회복지제도인 구빈원은 도시 안의 빈민과 환자를 돌보는 일 외에는 달리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으므로 피난민들을 돌볼 수 없었다. 이것이 시립 구빈원의 한계였는데, “제네바 사회 복지 체계는 제네바 시민들을 위해 제정된 것이었지 외국 피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⁴⁰⁾ 각처에서 제네바 시로 피난민들이 몰려오자 제네바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했다.

1545년 6월 15일에 제네바 시의회가 모든 가난한 외국인들을 도시 밖으로 추방하도록 결정했으나, 이로부터 10일이 넘기 전에 부유한 피난민 다비드 뷔장퐁(David (de) Busanton)이 제네바와 스트라스부르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거액의 돈을 유언으로 남기고 죽음으로써 제네바에 이주한 피난민들은 추방을 모면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부르즈 프랑쎬즈” 즉 프랑스기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⁴¹⁾ 하지만 프랑스기금의 기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원을 단정하기는 어렵다.⁴²⁾

분명한 것은 제네바 정부에 의해 운영된 시립구빈원의 재원과는 달리, “가난한 프랑스 피난민을 위한 기금”(Bourse des pauvres estrangers)은 개신교 피난민들을 구호하기 위해 외국인들이 설립한 순수한 사설 사회복지기금이었다는 사실이다.⁴³⁾ 또한 그것은 자발적 구호기금이었다. 프랑스기금의 첫 관리자 가운데 한 명으로 칼빈이 죽을 때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봉사했던 장 뷔데(Jean Budé)는 프랑스기금을 “하나님 말씀을 위해 이 도시로 피난 온 가난한 프랑스 외국인을 위한 기금”이라 불렀고, 그의 동생

40) 올슨, “칼빈이 제네바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 것에 관한 연구,” 163.

41) Olson, *Calvin and Social Welfare*, 33-34, 36, 165, 169-170; 올슨, “칼빈이 제네바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 것에 관한 연구,” 164-165. 16세기 종교개혁을 전후의 스트라스부르 사회복지제도에 관해서는 다음 참고. Otto Winkelmann, *Das Fürsorgewesen der Stadt Strassburg vor und nach der Reformation bis zum Ausgang des sechzehnten Jahrhunderts. Ein Beitrag zur deutschen Kultur- und Wirtschaftsgeschichte I/II* (Leipzig: Vermittlungsverlag von M. Heinsius Nachforge, 1922 = New York & London: Johnson Reprint Corporation, 1971).

42) Olson, *Calvin and Social Welfare*, 33.

43) Olson, *Calvin and Social Welfare*, 24-25.

프랑수와 뷔데(François Budé)는 자신의 유언장에서 “복음의 개혁을 위하여 이 도시로 피신한 가난한 프랑스 외국인들을 위한 기금”으로 표현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 기금이 지닌 의도는 피난민들 특히 종교 피난민들을 위한 기금이였다.”⁴⁴⁾ 단순히 프랑스 국적을 가진 개신교 피난민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개신교 난민들까지도 광범위하게 돕는 국제적 사회복지제도였다.⁴⁵⁾

프랑스기금은 1550년 9월 30일에 설립되었고 3명의 프랑스기금 종사자가 선출되었고, 초기에는 그들을 단순히 ‘기금 관리자’로 불렀던 것 같다. 언제부터 프랑스기금을 관리하던 사람들을 “집사”로 호칭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처음으로 그들에 대한 공식적인 호칭이 “집사”로 나타난 것은 1554년 7월에 칼빈의 집에서 그들을 선출할 때였다.⁴⁶⁾ 이 시기의 법적 문서들은 그들을 “가난한 외국인들을 위한 기금 관리자 및 집사”로 기록했다.⁴⁷⁾ 프랑스기금을 관리하는 집사들의 수는 고정된 것이 아니었으나, 1554년에 5명이었던 것 외에는 1550년부터 칼빈이 사망한 1564년까지 매년 3-4명 정도 선출되었다. 칼빈 사망 후에는 1565년에만 3명이었고, 1566-1577까지 항상 4명 이상이었다.⁴⁸⁾

프랑스기금의 관리 집사들은 1550년부터 누구에게 얼마를 지출했는지 회계장부에 매일 꼼꼼하게 기록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 신청했는지, 이들 가운데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기록하지는 않았다. 이 기금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예의범절이 있었는데, 가령 모범적으로 행동할 것, 개신교 정신에 맞는 규칙을 준수할 것, 도움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할 것 등이었다. 만일 이런 예의범절을 지키지 않을 경우 때로는 지원이 중단되

44) 올슨, “칼빈이 제네바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 것에 관한 연구,” 165.

45) 올슨, “칼빈이 제네바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 것에 관한 연구,” 166. 프랑스기금의 국제적 활동에 관한 상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다음 참고. Olson, *Calvin and Social Welfare*, 50-69.

46) Olson, *Calvin and Social Welfare*, 32.

47) 올슨, “칼빈과 사회윤리적 문제,” 269.

48) Olson, *Calvin and Social Welfare*, 72. 올슨이 자신의 책 5장 말미에 제공하는 도표 2번 참조.

거나 연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⁴⁹⁾

프랑스기금의 관리 집사들의 업무는 세 가지, 즉 돈을 받는 것과 지출하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심방하는 것이었다.⁵⁰⁾ 즉 그들은 기금을 최대한 모금하고 효율적으로 분배할 뿐만 아니라, 도와야 할 사람들과 도움을 받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기도 했다. 프랑스기금의 관리 집사들이 파트타임의 자원봉사자들이었고 행정업무와 심방업무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수행한 것으로 보아, 칼빈이 업무상 구분했던 두 종류의 집사 제도는 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것 같다.⁵¹⁾ 기금은 대부분 개별 기부자들의 후원금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가끔 시의회로부터 지원금을 받기도 했다.⁵²⁾ 심지어 외국에서도 프랑스기금에 기부하는 후원자도 있었다.⁵³⁾ 칼빈은 프랑스기금의 창립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이 기금의 정기적인 후원자이기도 했으며,⁵⁴⁾ 지인들에게 동참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기도 했다.⁵⁵⁾

시립구빈원처럼 사립 복지기구인 프랑스기금은 빈민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했으며, 환자를 돌보았고, 어린아이들을 양육했으며 직업을 알선하기도 했지만 시립구빈원과 달리 사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일도 했는데, 때로는 당대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만성적인 빈민들에게보다는 구제받기를 부끄러워하는, 한때 부유했던 빈민에게 더 많은 구제금을 제공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⁵⁶⁾ 또한 제네바에 피난 온 다른 다양한 민족들을 돕기도 했는데, 이들은 후에 자신들을 위해 프랑스기금과 같은 복지제도를 마련했다.⁵⁷⁾ 심지어 환자를 돌보기 위해 고용된 의사에게도 수고한 만큼 수당을

49) 올슨, “칼빈이 제네바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 것에 관한 연구,” 171.

50) Olson, *Calvin and Social Welfare*, 72.

51) Olson, *Calvin and Social Welfare*, 92.

52) 올슨, “칼빈이 제네바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 것에 관한 연구,” 172.

53) 프랑스기금의 기부자들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다음 참고. Olson, *Calvin and Social Welfare*, 107-126.

54) 올슨, “칼빈과 사회윤리적 문제,” 271-272.

55) 올슨, “칼빈이 제네바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 것에 관한 연구,” 173.

56) 올슨, “칼빈과 사회윤리적 문제,” 273.

57) Olson, *Calvin and Social Welfare*, 129.

지불했고,⁵⁸⁾ 설교 시간에 칼빈의 설교를 필사한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하기도 했다.⁵⁹⁾ 뿐만 아니라, 박해받으면서도 숨어서 신앙공동체를 이루었던 프랑스 지하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프랑스로 책을 보내고 목사를 파견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오늘날 선교영역에 해당한다.

새로운 사회복지제도인 프랑스기금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빈민들이 시립구빈원에서 도움 받는 사람들과 다른 점은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 빈민이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스스로 살아갈 길을 찾아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의 대표적인 사람이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의 조상 디디에르 루소(Didier Rousseau)였다.⁶⁰⁾ 디디에르 루소는 숙소 마련을 위해 프랑스기금의 도움을 받았는데, 후에 재정적으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언을 통해 프랑스기금의 기부자가 되기도 했다.⁶¹⁾ 프랑스기금은 피난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 가능한 거저 주는 것보다는 빌려 주는 것을 선호한 것으로 보이지만, 빌려준 돈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다. 물론 시립구빈원처럼 지속적인 구제 대상도 있었는데, 가령 “과부, 고아, 불구자, 병자, 허약한 개인들”이 그런 대상이었다.⁶²⁾

3-4. 교회 직분으로서의 집사와 사회복지

제네바에서는 빈민과 환자를 위한 두 종류의 사회복지제도가 공존했다. 하나는 제네바 정부가 세운 시립구빈원이었고, 다른 하나는 피난민 교회가 주축이 되어 설립한 시립 프랑스기금이었다. 칼빈은 둘 다 종교적인 사역으로 보았고 그 담당자들도 집사로 간주했다. 하지만 칼빈은 비록 집사들이 빈민과 환자와 약자를 돌보는 일을 주도하지만 구제가 단지 집사에게만

58) Olson, *Calvin and Social Welfare*, 98-99.

59) Olson, *Calvin and Social Welfare*, 99-100.

60) Olson, *Calvin and Social Welfare*, 103, 133-134, 264 n.28.

61) 올슨, “칼빈이 제네바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 것에 관한 연구,” 170-171.

62) 올슨, “칼빈이 제네바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 것에 관한 연구,” 168-170.

주어진 책무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교인들의 책임과 의무로 간주했고, 구제를 전 교회의 필수 사역이라고 가르쳤다.⁶³⁾

맥키는 제네바의 집사직무를 “제도적인 형태”와 “비제도적인 형태”로 구분하면서, 제네바 시정부에 속한 제도적인 집사직은 16세기 당시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 나타난 사회복지 발전과 매우 비슷하다고 지적한다.⁶⁴⁾ 비제도적 형태의 구제 시스템은 자발적인 것이었다. 제도적 형태의 집사는 유급의 공무원이었다면 비제도적인 형태의 집사는 무급의 자원봉사자였다. 그렇다면 칼빈이 즐기치게 주장한 이중 집사직의 기원은 무엇인가? 킹던(Robert Kingdon)에 따르면 칼빈의 이중 집사직 기원은 제네바 시의 제도적 사회복지 시스템인 시립구빈원이다.⁶⁵⁾ 반면에 맥키에 따르면 칼빈의 이중 집사직분 개념은 성경과 그의 성경해석으로부터, 특히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대한 그의 이해로부터 기원된 것이다.⁶⁶⁾

제네바에서는 칼빈이 도착하기 전 1535년에 이미 중세 전통의 자선기관이 정부 주도적인 중앙집권적 시립구빈원으로 개혁되었고 그곳에 행정을 위한 재무담당자와 봉사 실무를 위한 구호담당자를 배정했기 때문에 킹던의 사회적 관점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사회적 관점만으로 칼빈의 이중 집사직을 바르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칼빈은 이중 집사직분의 근거를 즐기치게 성경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킹던의 견해도 일리가 있지만, 킹던이 주장하는 “칼빈의 집사직분에 끼친 사회적 영향 이론”(social-influence theory of Calvin's diaconate)에 대한 맥키의 다음과 같은 주장이 훨씬 더 균형 잡힌 견해로 보인다.

63) 맥키, 『칼뱅의 목회 신학』, 117.

64) McKee, *Diakonia in the Classical Reformed Tradition and Today*, 56. = 『개혁교회 전통과 디아코니아』, 101.

65) Kingdon, “Social Welfare in Calvin's Geneva,” 50–69; idem, “Calvinism and Social Welfare,” 212–230. 맥키가 자신의 견해를 비판한 것에 대한 킹던의 방어와 재비판에 관해서는 다음 참고. Kingdon, “Calvin's Ideas About the Diaconate: Social or Theological in Origin?,” 169–180 = 킹던, “칼빈의 집사 직분 이해,” 135–158.

66) McKee, *John Calvin in the Diaconate and Liturgical Almsgiving*, passim; McKee, *Diakonia in the Classical Reformed Tradition and Today*, 58–60, 64–82. = 『개혁교회 전통과 디아코니아』, 103–105, 110–135.

“칼빈이 율법의 두 판인 경건(pietas)과 사랑(caritas)을 한 쌍으로 묶을 것을 강조했던 것을 고려하고, 또한 기독교인의 자선의 직무를 갱신하려는 개신교의 공동 노력을 고려한다면 그와 같은 집사직분이 사회적 개혁 때문에 발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게 된다. 만인제사장직과 평신도 지도력에 대한 칼빈의 견해를 기억한다면 칼빈이 종교적인 자선 임무에 대한 평신도의 세속적 지도력을 찬성하는 온갖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빈민구제에 있어서 평신도의 역할을 인정한 것은 모든 개신교의 가르침과 일치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치적 편익주의의 문제가 아니었다. 집사의 직무가 (우선) 교회론적 기반에 근거했다는 것은 칼빈이 폐지된 집사직분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에서 명확하게 되는데, 이것은 종교 사회와 시민 사회가 구분될 수 있고 (또한 되어야 한다)는 칼빈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회의 평신도 집사직분은 시민적 기반 없이도 가능하다. 또한 칼빈이 빈민구제를 위한 독특한 직분을 교회의 필수 사역으로 발전시킨 일에 사회개혁 운동이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말할 수는 없다.”⁶⁷⁾

중세 로마교는 잘못된 전통에 따라 집사직분을 단순히 성례를 돕는 신부의 보좌 기능으로 간주했지만, 칼빈은 자신의 사도행전 6장 1-6절 주석과 디모데전서 3장 8-13절 주석과 『기독교 강요』 4권 3장 9절 등에서 집사직분을 빈민구제를 위한 교회의 항존직으로 설명하면서 집사를 두 종류로 구분했다. 즉 빈민과 환자 및 약자를 위해 재정을 모금하고 관리하는 집사와 실질적이고 물질적으로 직접 그들을 보살피는 집사로 구분한 것이다. 또한 로마서 16장 1-2절과 디모데전서 5장 3-10절을 근거로 빈민과 병자를 보살피는 여성 집사직분을 강력히 옹호하기도 했다. 재정 관리자인 남자 집사는 여자보다 우위에 있었으며 안수를 받았고, 여자 집사는 주로 나이 든 과부가 선출되었는데, 대부분 어려운 형편 때문에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었다.⁶⁸⁾

67) McKee, *Diakonia in the Classical Reformed Tradition and Today*, 58-59. = 『개혁교회 전통과 디아코니아』, 104.

68) McKee, *Diakonia in the Classical Reformed Tradition and Today*, 64. = 『개혁교회 전통과 디아코니아』, 111. 칼빈 시절의 제네바에는 여성집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특이하게도 칼빈이 주장한 이중 집사직분의 성경적 근거는 다름 아닌 로마서 12장 8절의 “구제하는 자”(qui largitur)와 “공휼을 베푸는 자”(qui miseretur)였다.⁶⁹⁾ 칼빈은 자신의 『로마서주석』에서 그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그가[=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메타디돈토타스’[=구제하는 자들]란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주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배분되어야 하는 교회의 공적 재정을 책임진 집사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엘룬타스’[=공휼을 베푸는 자들]란 옛 교회의 관습을 따라 돌봄 받아야 하는 환자들을 맡게 된 과부들과 다른 사역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두 가지의 구별된 기능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빈민을 위해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과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자들에게 자신들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자의 사람들에게] 그가 배정하는 것은 그들이 속임수나 차별 없이 자신들에게 위탁된 것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성실함이다. 후자의 사람들에게 그가 원하는 것은 자주 발생하곤 하는 그들의 괴팍스러움 때문에 직무로부터 감사를 제거하지 않도록 즐거움으로 순종을 보여주는 것이다.”⁷⁰⁾

로마서 12장 8절에 대한 칼빈의 이러한 해석은 스트라스부르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부셔(Martin Bucer)에게서 받은 영향인데,⁷¹⁾ 부셔는 로마서

69) 『기독교 강요』 4.3.9 (OS V, 50; CO 2, 783): “Cura pauperum diaconis mandata fuit. Quamquam ad Romanos duo ponuntur genera. Qui largitur (inquit illic Paulus) id faciat in simplicitate: qui miseretur, in hilaritate [ibidem]; quum de publicis ecclesiae muneribus eum loqui certum sit, oportet duos fuisse gradus distinctos.”

70) CO 49, 240; T.H.L. Parker, ed., *Johannis Calvini Commentarius in Epistolam Pauli ad Romanos* (Leiden:E.J. Brill, 1981), 271-272: “Per metadidou/naj, de quibus hic loquitur, non eos intelligit qui largiuntur de suo: sed Diaconos qui publicis Ecclesiae facultatibus dispensandis praesunt. Per eleou/ntaj autem, viduas et alios ministros qui curandis aegrotis, secundum veteris Ecclesiae morem, praeficiebantur. Sunt enim functiones duae diversae, [erogare] pauperibus necessaria, et [suam illis tractandis operam impendere. Caeterum prioribus] assignat simplicitatem qua sine fraude 꺾 personarum acceptione, fideliter sibi commissa administrent: ab his obsequia vult exhiberi cum hilaritatem, ne morositate sua (quod evenire plerumque solet) gratiam officiis detrahant.” 한글 번역은 다음 참고. 『칼빈주석 20. 로마서』, 박문재 역 (서울: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3), 384.

71) McKee, *John Calvin in the Diaconate and Liturgical Almsgiving*, 193-195.

12장 7-8절에 대한 자신의 주석에서 “구제하는 자”(impartiensi)를 “집사”(diaconus) 즉 “교회의 재산과 성도들의 연보를 나누어주기 위한 교회의 사역자”(Ecclesia minister ad dispensandas facultates Ecclesiae & sanctorum collationes)로 정의하고 “궁핍을 베푸는 자”(miserans)를 “환자와 불쌍한 자들을 위로하는 직무 수행자”(munus gerens consulendi adflictis & miseris)로 정의하면서 이것을 “교회의 공적인 직분들과 은사들에 관한”(de publicis Ecclesiae muneribus & donis) 사도 바울의 언급이라고 설명했다. ⁷²⁾ 이러한 성경해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칼빈은 이 구절을 사도행전 6장과 디모데전서 3장과 연결하여 “구제하는 자”를 선택된 일곱 명의 (남성) 관리자로 간주했고, “궁핍을 베푸는 자”를 불쌍한 사람들을 친히 돌보는 (여성) 보호자로 간주했다. ⁷³⁾

예배의 내용과 관련하여 칼빈은 “사도교회의 관습”(ecclesiae apostolicae usus)을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찾았다. “그가[=누가] 말하기를 신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와 빵의 떼와 기도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온전히 수행되어야만 했던 것은 교회의 어떤 모임도 말씀과 기도와 성찬참여와 구제 없이 이루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

72) Martin Bucer, *METAPHRASIS ET ENARRATIO IN EPISTO[LAS] D[OCTORIS] PAULI APOSTOLI AD ROMANOS, IN QVIBUS SINGVLATIM APOSTOLI OMNIA, CVM ARGumenta, tum sententiae & verba, ad auctoritatem diuinae scripturae, fidemque Ecclesiae Catholicae tam priscae quam praesentis, religiose ac paulo fusius excutiuntur* (Basel: Petrum Pernam, 1562), 541: “Est impartiens, hoc est, Ecclesiae minister ad dispensandas facultates Ecclesiae & sanctorum collationes, in vsus egentium, qui alias Diaconus, id est, minister simpliciter dicitur, cum dono impartendi, ... Est miserans, munus gerens consulendi adflictis & miseris, in quo ministerio plurimum molestiae est: at qui etiam dono pollet ad munus hoc rite obeundum, is citra molestiam, & hilariter munere eo fungetur... Scio plerosque omnia illa, impartiens in simplicitate, & miserans in hilaritate, de priuata quorumlibet impartione & miseratione interpretari: at Apostolus loquitur hic de publicis Ecclesiae muneribus & donis, quibus ad vtilitatem communem totius corporis Dominus quosdam instruit, ...” 이 본문의 영어 번역은 다음 참고, McKee, *John Calvin in the Diaconate and Liturgical Almsgiving*, 193-194.

73) McKee, *Diakonia in the Classical Reformed Tradition and Today*, 76 = 『개혁교회 전통과 디아코니아』, 127.

다.⁷⁴⁾ 칼빈에 따르면 성찬예배의 다양한 요소들은 모두 사도행전 2장 42 절이 제시하는 가르치는 것(=말씀낭독 및 해설)과 교제하는 것(=연보 즉 구제금)과 빵을 떼는 것(=성찬)과 기도하는 것(=기도와 찬양)에 포함된다.⁷⁵⁾ 예컨대 이것은 “칼빈 예배의 4가지 기본 요소들”로 불린다.⁷⁶⁾

결론적으로, 집사직분과 관련하여 개혁과 종교개혁자로서 칼빈 신학의 독특성과 독창성은 그가 부써처럼 집사직분을 성경의 권위와 신약의 초대 교회 전통에 근거하여 “교회의 공적 직무”(publicum ecclesiae munus)로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집사직분을 두 종류로 구분했다는 점이다.⁷⁷⁾ 루터와 츠빙글리는 둘 다 신약성경 교회의 직분이 모든 시대의 규범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시대의 교회에 필요한 항구적 직분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루터와 츠빙글리는 구제를 정부 주도적인 업무로 보았던 반면에, 칼빈과 부써는 구제를 교회의 고유한 업무로 간주했다. 루터와 츠빙글리처럼 칼빈도 정부가 구제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칼빈이 구제의 주도적인 역할을 정부가 아닌 교회가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분명 그들과 다른 점이다. 칼빈에 의하면 구제를 위해서는 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는 부차적인 역할, 즉 최대한 잘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칼빈에게서 구제의 교회

74) OS 1, 149: “...cum fideles ait perseverantes fuisse in doctrina apostolorum, communicatione, fractione panis et orationibus. Sic agendum omnino erat, ut nullus ecclesiae conventus fieret sine verbo, orationibus, participatione coenae, et elemosynis.”

75) 사도행전 2장 42절에 대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에 관한 정보는 다음 참고. McKee, *John Calvin in the Diaconate and Liturgical Almsgiving*, 72-89; 황대우, “종교개혁과 예배: 부써와 칼빈의 예배 이해를 중심으로,” 71-75, 85. 여기서 부써가 이 구절을 항상 사중적인 구조로만 이해하고 인용한다고 기술한 맥키의 주장과는 달리, 스트라스부르 종교개혁자는 때론 “교제와 떡을 떼”를 하나로 묶어 “빵을 떼는 교제”(communicatio fractionis panis)로 보는 삼중적인 구조로 인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삼중 구조로 번역된 불가타(Vulgata) 역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참고. Cornelis Augustijn & Pierre Fraenkel & Marc Lienhard eds., *Martini Bucer Opera Latina 1* (Leiden: E. J. Brill, 1982), 33: “Deinde ad locum in Actis Apostolicis, ubi scribitur: *Erant autem perseverantes in doctrina Apostolorum, et communicatione fractionis panis.* [Act. 2, 42].”

76) 참고. 피터, “칼빈과 예식서: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215-216; 최윤배, “16세기 개신교 예배 이해와 칼빈,” 46.

77) 「기독교 강요」 4.3.9 (OS V, 50; CO 2, 783).

론적인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간과되지 말아야 할 개혁신학의 위대한 전통과 유산이다.

3-5. 칼빈의 사회복지 원리: 사랑의 법(*lex caritatis*)

칼빈은 교회 재산의 분배를 통한 빈민 구제를 교회의 고유한 직무로 분류하고 이 직무의 담당자를 “빈민을 돌보는 자” 즉 “집사”로 정의했다. 교회의 구제비 지출의 비율에 대해 칼빈은 초대교회의 옛 관습을 근거로 “교회의 모든 재산”(omnes Ecclesiae bona) 즉 교회 수입에서 “적어도 절반은”(dimidia saltem) 가난한 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했다.⁷⁸⁾ 그래서 한편으로 칼빈은 16세기 로마가톨릭교회의 성직자들이 단 한 푼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지 않고 자신의 배만 채운 것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암브로시우스(Ambrosius)를 포함하여 초대교회 교부들이 감독들의 “가난”(paupertas)을 가르치고 겸손함과 검소함으로 그 가난을 스스로 실천했던 것에 대해 높이 찬양했다.⁷⁹⁾

칼빈에 따르면 교회 재산과 수입의 가장 큰 용도는 빈민을 구제(*dispensatio*)하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고대교회가 지켜온 것이기도 한 진정한 집사직”(vera diaconia quam et verbum Dei nobis commendat,)이다.⁸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회 재산과 수입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모두 해로운 것뿐이었고, “그 가운데 유용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utiles vero nulla ex parte esse)는 비난과 함께 칼빈은 주장하기를 “이 재물들은 그리스도께 드려진 것이므로 그분의 뜻대로 분배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주교들은] 자신들을 위해 남겨두기를 원하는 반면

78) 『기독교 강요』 4.5.16 (OS V, 86; CO 2, 809). 여기서 칼빈은 교회 수입의 “4분의 1을”(quartam partem) 가난한 자의 몫으로 규정한 교회법(Canones)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79) 『기독교 강요』 4.5.17 (OS V, 87-88; CO 2, 809-810).

80) 『기독교 강요』 4.5.18 (OS V, 88; CO 2, 810).

에, 백성을 우상숭배로 인도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해 지출되어야 하는 것을, 성전을 건축하고 성상들을 세우고 성구(聖具)를 사고 값비싼 성복들을 갖추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심연으로 인해 매일의 연보들(=구제금)은 낭비되고 있다.”⁸¹⁾ 이런 현상은 당시 로마가톨릭교회에서 “집사직의 합법적 질서”(legitimus diaconatus ordinem)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⁸²⁾

칼빈에 따르면 당시 천주교의 직분 제도 속에서 이 집사직분은 단순히 사제가 되기 위한 한 “과정”(gradus)일 뿐, 결코 하나의 “직분”(munus)이 아니었다. “하지만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신자들이 서로 입 맞추고 자신들의 연보를 제단에 드렸던 것은 옛 관습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와 같이 먼저 상징을 통해, 다음으로 그들의 선행(=자선)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을 보여주었다. 빈민을 돌보는 자였던 집사는 헌납된 것을 받았는데, 그것은 나누어주지 위해서였다.”⁸³⁾ 여기서 우리는 칼빈이 구제를 위한 교회 연보를 기독교 사랑의 실천으로 간주했고, 연보를 나누어주는 일을 교회 집사의 고유 직무로 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칼빈은 단지 교회직분으로서 집사뿐만 아니라, 시립구빈원에서 구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집사”라 불렀는데, 이유는 그들 모두 공통적으로 빈자와 환자를 위한 직무를 맡은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구제의 원리는 그 주체가 교회이든, 기독교 정부이든 상관없이 인류애, 즉 인류에 대한 기독교 사랑이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에서 평등하며, 신자란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81) 『기독교 강요』 4.5.18 (OS V, 88-89; CO 2, 811): “Bona haec Christo sunt dicata; eius itaque arbitrio dispensanda sunt: Verum dum sibi volunt [Episcopatus] parcere, populum superstitione inducunt ut quod erat in pauperes erogandum, ad extruenda templa, ad erigendas statutas, ad emenda vasa, ad pretiosas vestes comparandas convertant. Ita hoc gurgite quotidianae eleemosynae absumuntur.”

82) 『기독교 강요』 4.5.19 (OS V, 89-90; CO 2, 811-812).

83) 『기독교 강요』 4.5.15 (OS V, 86; CO 2, 808-809): “Fuit autem id antiqui moris ut eleemosynas ad altare offerrent: ita symbolo prius, deinde ipsa beneficentia charitatem suam declarabant. Diaconus, qui oeconomus erat pauperum, recipiebat quod dabatur ut distribueret.”

것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나눔으로써 인류의 자발적 평등을 스스로 실천해야 할 존재라고 제네바 개혁가는 역설했다. 그래서 칼빈은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을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어리석은 것이라고 가르친다. 즉 고통으로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저주받고 버림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자들과 불확실하고 일시적인 재산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은총(Dei favor)을 평가하는 자들, 즉 부자들에게 대해서는 복 받은 자로 여겨 칭송하는 반면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자로 여겨 경멸하는 자들, 이런 자들의 판단은 어느 시대나 지배적인 “나쁘게, 부당하게 판단하는 사악함”(mala et sinistre iudicandi pravitas)이다.⁸⁴⁾ 이것이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다.

제네바 종교개혁가에 의하면, 타락한 인간의 내부 깊숙한 곳에는 명예욕과 자기사랑이라는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noxiosissima pestis)이 박혀 있는데, 이것을 뽑아낼 수 있는 “치료제”(remedium)는 다음과 같은 “성경의 가르침”(Scripturae doctrina)이 유일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은 우리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다.”⁸⁵⁾ 칼빈에게 있어서 이것은 자기부인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웃사랑을 의미한다. 타락으로 인해 이미 자신을 사랑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인간이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관심을 멈추지 않고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는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charitas)을 실천하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의 법에 따르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얻은 모든 것은 “교회의 공공의 선에 맞게 사용되도록” 우리에게 위탁된 것이다.⁸⁶⁾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더

84) CO 31, 418 (『시편주석』 시41: 1). 참고, 올슨, “칼빈과 사회윤리적 문제,” 277.

85) 『기독교 강요』 3.7.4 (OS IV, 154; CO 2, 509): “... ut quas Deus nobis largitus est dotes, meminerimus non nostra esse bona, sed gratuita Dei dona:...”

86) 『기독교 강요』 3.7.5 (OS IV, 155; CO 2, 509): “... quicquid a Domino gratiarum obtinemus, esse nobis hac lege concreditum ut in commune Ecclesiae bonum conferatur:...”

불어 자유롭고 친절하게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은혜의 합당한 사용법이다... 그와 같이 경건한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형제를 위해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호의와 선행(=자선)의 법칙이 되게 하라. 즉 우리가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모든 것의 청지기라는 것인데, 이(=청지기)는 분배의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있는 자다. 나아가 사랑의 규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분배라는 것이다.”⁸⁷⁾

이처럼 칼빈에게 있어서 구제의 제일 원리는 사랑이다. 그리고 이 사랑의 실천자는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가진 것을 나누는 것, 특히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사랑의 실천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이웃의 범위는 단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지체들에 국한되지 않고 불신자들까지도 포함된 온 인류다.⁸⁸⁾ 칼빈은 온 인류가 비록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동일한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여전히 하나의 공동체요, 한 가족, 한 몸이라고 생각했다.⁸⁹⁾ 이런 점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상호 교제를 통해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각자 자신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류는 거룩한 끈으로 상호 연합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의 법칙들을 거스르지 않고 싶다면 우리는 개별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87) 『기독교 강요』 3.7.5 (OS IV, 155-156; CO 2, 509-510): “...: ideoque legitimum gratiarum omnium usum esse, liberalem ac benignam cum aliis communicationem, ... Sic pius vir quicquid potest, fratribus debet posse: ... Haec itaque sit nobis ad benignitatem beneficentiamque methodus: quicquid in nos Deus contulit quo proximum queamus adiuvere, eius nos esse oeconomos, qui ad reddendam dispensationis rationem astringimur. Eam porro demum rectam esse dispensationem, quae ad dilectionis exigatur regulam.”

88) CO 24, 724 (『신명기주석』 6:5); Dae-Woo Hwang, “Het mystieke lichaam van Christus, De Ecclesiologie van Martin Bucer en Johannes Calvijn” (diss. Theologische Universiteit te Apeldoorn), 229, n.2414.

89) CO 53, 159-160 (디모데전서 설교 2:56). 이처럼 칼빈은 온 인류를 한 몸과 한 가족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불신자를 “잘려나간 지체”라고 부르면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을 “형제”에 호소했던 것이다. 참고. 황대우, “갈뎡의 교회론과 선교,” 『선교의 신학』 제24집 (2009), 43-87.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할 것이다.”⁹⁰⁾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이 창조의 원리이며 자연의 법칙이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불우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돌아보아야 의무와 책임을 가져야 할 것이다.⁹¹⁾ 그 이유에 대해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러나 오히려 각자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즉 그가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자신의 이웃에게 빚진 자라는 것이요, 또한 [자신의] 능력들(=재산+재능)이 소진되지 않는 한 그들을 향해 베푸는 선행(=자선)의 다른 한계는 설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들(=능력들)이 얼마나 넓게 확장되는 것인지는 사랑의 규칙에 따라 한정되어야 한다.”⁹²⁾ 얼마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칼빈의 대답은 사랑의 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인데, 사랑의 법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베푸시는 것처럼 넉넉하게 베풀고 선하게 베풀되 할 수 있는 만큼, 즉 능력의 한계 내에서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⁹³⁾

이런 점에서 칼빈은 비록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창조된 세상 자체를

90) CO 48, 303 (『사도행전주석』 13:36): “Neque enim sibi quisque natus est, sed inter se quasi sacro nexu colligatum est humanum genus. Ergo nisi leges naturae evertere libeat, meminerimus non privatim nobis vivendum esse, sed proximis nostris.”

91) 종교개혁자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이타적 사랑과 삶에 대해 강조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근거로 이타적 삶을 강조한 대표적인 종교개혁자로는 마르틴 부쎈(Martin Bucer)를 꼽을 수 있는데, 이유는 그가 1523년에 출판한 그의 첫 작품이자 그의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인 다음 저술 때문이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과 어떻게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원문은 다음 참고. *Martin Bucers deutsche Schriften Band 1. Frühschriften 1520-1524*, Ed. by Robert Stupperich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 44-67. 이 고대 독일어 작품은 불어, 영어,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참고. Henri Strohl, tr., *Traité de l'Amour du Prochain*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49); Paul Traugott Fuhrmann, tr., *Instruction in Christian Love [1523]* (Richmond: John Knox Press, 1952); 황대우 편저, 『삶, 나 아닌 남을 위하여: 마르틴 부쎈의 기독교 윤리』, 13-57.

92) 『기독교 강요』 3.7.7 (OSIV, 158; CO 2, 512): “Sed ita potius secum quisque cogitabit, se, quantus quantus est, proximis debitorem sui esse: nec alium exercendae erga ipsos beneficentiae statuendum esse finem nisi quum facultates deficient: quae, quam late extenduntur, ad charitatis regulam limitari debent.”

93) 잘 알려진 것처럼 칼빈은 재산에 대해 공산주의식 만인평등권을 반대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회 안에서 연보의 원리, 빈부 격차에 따른 연보 차이, 균등하고 공정한 분배를 의미하는 “공평성”(aequalitas) 즉 “형평의 참된 규칙”(vera aequitatis regula)에 대한 칼빈의 견해에 관해서는 다음 참고. CO 50, 100-102 (『고린도후서주석』 8:13-16).

악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 예컨대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과 음식, 향기로운 냄새 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길 수 있도록 주신 선물로 간주했다.⁹⁴⁾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주신 분의 뜻대로 사용하고,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 즐기고 누릴 수 있다. 돈도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다. 재물 역시 용도와 목적, 그리고 사용 방법에 따라, 즉 합당하게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부인”(abnegatio sua)을 “기독교적인 삶의 최고봉”(summa vitae Christianae)⁹⁵⁾으로 묘사한 칼빈은 “선행” 즉 “자선”(beneficentia)이 진정한 자기부인이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자기부인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인정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즉 우리 인생의 새로운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온 몸과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 자신을 떠나는 것이야말로 자기부인이며 동시에 이웃사랑이라는 주장했다.

4. 결론

칼빈이 주장하는 사회복지의 개념은 기독교사상의 대원리인 사랑이다. 구제와 자선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 칼빈의 사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요소는 믿음과 사랑이며, 이 사랑은 믿음의 결과와 내용이다.⁹⁶⁾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잣대요 시금석이다. 하지만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에게 의무와 책임인 동시에 특권이기도 하다. 하나님 아

94) 칼빈의 일반은총론에 관해서는 다음 참고. H. Kuiper, *Calvin on Common Grace* (Goes: Oosterbann & le Cointre, 1928). 까위베르(Kuiper)에 따르면 칼빈은 자신의 글 어디에서도 “일반은총”에 해당하는 라틴어 “gratia communis”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95) 『기독교 강요』 3.7.1-2 (OS IV, 151-152; CO 2, 505-506).

96) 칼빈에게 있어서 믿음과 사랑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다음 참조. Hwang, “Het mystieke lichaam van Christus,” 230; McKee, *John Calvin in the Diaconate and Liturgical Almsgiving*, 258-259.

부지의 사랑을 받고 깨달은 자녀가 그 사랑을 기꺼이 나누어주는 실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수직적 사랑은 예배로 표현되어야 하고, 형제자매인 이웃에 대한 수평적 사랑은 베품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적인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예배와 삶의 핵심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사랑 없는 예배와 삶이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

칼빈에 따르면 구제는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 예배의 기본 요소 가운데 하나다. 칼빈에게 구제금인 연보 없는 예배는 상상할 수 없다. 연보는 교회의 교제를 위한 것이다. 세상 속에서 교회가 나누어야 하는 것은 단지 복음이나, 영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나눔의 대상이다. 이런 나눔의 대상에서는 육적인 것도 포함된다. 신자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나누어야 한다. 신자는 사랑의 빛진자다. 이런 신자들의 모임 즉 신자공동체가 곧 교회다. 교회는 예배공동체여야 하고, 동시에 교제공동체여야 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예배가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수직적인 것이라면 교제는 신자와 신자, 교회와 세상 사이의 수평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빛을 갚는 것, 이것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고유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칼빈의 가르침이다. 즉 나눔과 베품은 교회의 일이요, 이 업무를 맡은 것이 교회의 집사직분이라는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지상 교회의 존재와 역할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기독교 삶의 대원리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자선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이다. 예배가 교회의 내부적 사역이라면 자선은 교회의 외부적 사역으로 간주 될 수 있다.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인은 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함께 모이는데, 이것이 예배공동체다. 반면에 그들은 하나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기 위해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데, 이것이 전도공

동체요, 선교공동체다. 이런 점에서 예배와 선교는 각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대변된다. 그러므로 사랑 없이는 진정한 예배도 선교도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 자체가 불가능하다.

칼빈에 따르면 기독교 사랑의 실천인 구제와 자선은 단지 교회만의 봉사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정부의 봉사 직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고와와 과부와 환자 등과 같은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을 위한 구제와 자선 업무를 교회와 정부가 상호 협력하여 수행한 것이 16세기 제네바 시의 사회복지제도였는데, 이것을 감안하면 16세기 제네바 시의 사회복지제도는 구제와 자선에 대한 칼빈의 신학적 개념과 깊은 관계 속에서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회와 정부 가운데 구제와 자선의 주체는 누구인가?’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칼빈은, 당대의 대표적인 두 종교개혁자 루터와 츠빙글리와는 달리, ‘교회’라고 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머리이시지만, 그의 몸은 오직 교회뿐이며, 이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에베소서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 안에 갇혀 있지 않고 교회를 통해 땅 끝까지 확장되어야 하며, 구제와 자선은 그 사랑의 현실적인 실천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칼빈의 사회복지 개념은 무엇보다도 성경해석에 근거한 교회론에서 기원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칼빈은 성경학자와 신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이면서 사회지도자였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사회적-경제적 측면을 무시하고 충분히 고려했다. 그래서 빈민구제와 관련하여 당시 제네바 시의 모든 사회와 교회 문제들의 해답을 성경과 교회 역사에서 찾으려고 노력한 결과, 칼빈은 자신만의 독특한 사회복지 개념에 도달하게 되었고, 이것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대안까지 모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칼빈의 제네바 사회복지제도는 오늘날 한국의 사회복지제도와 외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의 주체는 교회이고 국가는 교회에 복지재

정을 지원함으로써 교회의 사회복지를 돕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교회가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한, 사회복지에 대한 감시감독권이 정부에만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교회개척의 다른 형태이거나 교회성장의 수단 내지는 대체교회로서의 생계수단이라는 점이다. 한국교회의 이와 같은 기형적 사회복지형태는 신학 부재의 결과인데 반해, 16세기 제네바교회의 사회복지제도는 칼빈 신학이라는 건전한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이다.